

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국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육성계획 등의 수립·시행과 국방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국방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나. 국방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(안 제5조 ~ 안 제10조)

다.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(안 제11조)

라. 국방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(안 제12조)

마.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·점검(안 제13조)

바. 국방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6일 제정되었음
- 충청북도는 2021년 7월 충북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입 활성화와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, 이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- 이에 충청북도 국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4조는 ‘국방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’에 관한 사항으로, 현행 조례는 매년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- 안 제5조는 ‘국방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’에 관한 사항으로,
 - 현행 조례는 국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‘국방산업발전협의회’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개정안에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‘국방산업육성위원회’로 변경하여 자문기관에서 심의·자문기관으로 ‘격상’ 함

-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1호에서 ‘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’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이는 안 제4조에 따라 ‘국방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’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
- 또한, 제4호에서 ‘국방산업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’에 관해서도, 제2조제2호와 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이 ‘국방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’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

○ 안 제6조는 ‘위원회 구성’에 관한 사항으로,

- 현행 조례의 협의체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과학인재국장으로,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업무 담당 과장으로, 제4항에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‘격하’하고, 위원회를 안전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·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려 한 것은 관(官)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
- 국방산업의 특성상 국방 기술력과 경험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(民間)주도가 아닌 관(官)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, 경직된 운영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, 관련 부서의 구체적이고 보편·타당한 설명이 요구됨
- 또한, 제3항제1호에서 위촉직 위원 중 충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‘삭제’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의 참여 제한과 제3호 및 제4호에서 육군 등 군 관련기관 또는 국방 관련 연구

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‘삭제’ 한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약화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

- 안 제7조는 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’에 관한 사항으로,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,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에서는 강화한 반면, 제3호에서는 완화하였음
 -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, 감정 외에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국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과 위원회 설치와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
- 국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을 격상했음에도, 구성에 있어서는 격하한 점,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의원과 전문가 집단 일부를 배제한 점,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점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건 완화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·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